

파주시읍·면·동·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1단계 공사완료에 따른 사업부지내 3개의 행정구역이 혼재되어 있어 이들 일부 필지에 대한 리간 경계조정을 통하여 입주민의 재산권행사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·면·동·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교하읍 산남리, 서패리 일부 ⇒ 교하읍 문발리로 편입

변 경(前)				변 경(後)			
리	필지수	면적(m²)	비 고	리	필지수	면적(m²)	비 고
계	112	794,864		계	112	794,864	
서패	4	279,917		문발	112	794,864	
산남	108	514,947					

계	답	임 야	하 천	구 거	제 방
112필지 794,864m²	18필지 66,321m²	4필지 5,963m²	82필지 699,433m²	3필지 21,486m²	2필지 542m²

전	유 지
1필지 431m²	2필지 688m²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- 동 개정조례안건은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산남리 서패리 일원에 조성중인

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가 1단계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사업부지내에 혼재된 문발리 산남리 서패리 등 3개리의 필지를 리간 경계를 조정하여 문발리로 편입, 일원화함으로써 사업단지내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업무편익에 도움을 주고 아울러 일선 행정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

- 이와 같은 행정구역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 제4항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 근거에 문제점이 없음.

나. 내용타당성

- 동·리명칭과 관할구역의 조정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3개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출판산업단지의 입지성을 역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“문발리(文發里)로 변경, 일원화하여 첨단국가산업단지가 파주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인식시키고 아울러 동 산업단지를 통해 파주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조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리명칭·관할구역 조정내역	<총2개리 112필지 794,864㎡> 서패리 4필지 279,917㎡ 산남리 108필지 514,947㎡ } ⇒ 문발리 112필지 794,864㎡
------------------	--

<지방자치법>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 ④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·분합할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